

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 공청회 개최 공고

『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』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‘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’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·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.

2025년 11월 13일

성 북 구 청 장

1. 공청회 개최 목적

- 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 의견 청취

2.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

- 일 시 : 2025년 11월 28일(금) 15:00
- 장 소 : 장위1동 주민센터 3층 강당 (주소:서울시 성북구 장위로 61)

3.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 개요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3-552 일대
- 면 적 : 145,174.6㎡
- 주요내용 : 기반시설계획, 건축계획(용적률, 높이 등) 등 재정비촉진계획(지구단위 계획) 변경(안) 전반에 대한 사항

4. 발표신청 및 신청기한

- 공청회에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2025년 11월 27일까지 서면(우편, 팩스 등)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대표자를 선정(2인 이내) 하겠습니다.
-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
- 공청회 발표자 참가 신청
 - 주 소 : (02848)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168, 9층 성북구청 주거정비과
 - 연 락 처 : 전화 (02) 2241-2834, 팩스 (02) 2241-6545
 - 신청서식 : 성북구 홈페이지 『고시공고』 란에 공고문과 함께 게재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2241-283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

공청회 발표자 선정 신청서

신청자	성명	(생년월일 :)
	주소	
	연락처	(핸드폰 :)
	신청자격	당사자, 이해관계인, 관련분야(전문가, 종사자), 단체대표(소속단체:), 기타
	주요경력 및 이력	
	권리물건	
발표요지		
신청자주의사항	① 공청회 발표자는 행정청(성북구청)에서 신청자 중 2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 ② 발표 신청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 38조의3 규정에 의거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습니다. ③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합니다. ④ 발표자는 공청회 주재자의 진행에 따라야 하며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,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, 퇴장명령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⑤ 발표자별 발표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. ⑥ 기타 공청회와 관련 문의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2241-283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	

2025. 11. .

성 북 구 청 장 귀하